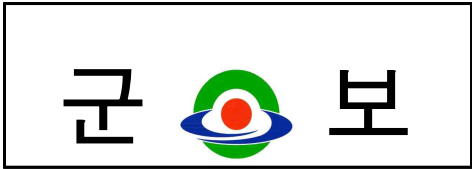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55호 2024. 9. 12.(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31호)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32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31호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읍·면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 기관
총 무 분 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제19조, 제21조	읍면
	2.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한 권한	1. 직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읍면
재 무 분 야	1. 군수입증지 조례중 다음의 권한	1. 증지의 사용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	읍면
	2. 지방세기본법 중 다음의 권한	1.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읍면
	3.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	1. 건축물 실측 현지조사	지방세법 106조	읍면
		2. 토지현황 조사	지방세법 제106조	읍면
	4.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결정, 반환결정	지방회계법 제20조, 지방회계법 제28조	읍면
	5. 지방회계법 중 다음의 권한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	지방회계법 제29조	읍면
		2.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 검사	지방회계법 제29조	읍면
	6. 군 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의 권한	1. 불용품 매각처리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지 역 경 제 분 야	1. 공설시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와 사용제한 2. 사용료 부과·반환·감면 3. 사용자에 대한 설비 복구 및 기타사항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9조 같은 조례 제12조, 13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19조	읍면 읍면 읍면
	2. 군 새마을 소득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융자금 회수 및 독촉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조례 제2602호) 부칙 제2조제1항	읍면
주 민 복 지 분 야	1. 국민기초생활 보장 관련 법률 중 다음의 권한	1. 구호환자, 진료신청 2. 수급자 증명 3. 급여신청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읍면 읍면 읍면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2.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3.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읍면 읍면 읍면
	3. 기초연금법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권한	1. 기초연금의 지급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읍면
	1.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및 발생억제 추진	폐기물관리법 제4조	읍면
		2.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6조	읍면
		3. 생활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같은 법 제8조제1항	읍면
		4. 생활폐기물 청결유지 명령	같은 법 제8조제3항	읍면
		5.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8조	읍면
환 경 관 리 분 야	2.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폐쇄승인 신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산 립 녹 지 분 야	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	읍면
건 설 교 통 분 야	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66조, 제68조	읍면
		3.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읍면
	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읍면
		3.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20조	읍면
	3.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신고, 변경신고 처리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읍면 (예천읍 제외)
		2. 번호판 부착과 봉인	같은 법 제49조	읍면 (예천읍 제외)
		3. 정비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읍면 (예천읍 제외)
		4. 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읍면 (예천읍 제외)
		5. 이륜자동차의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읍면 (예천읍 제외)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건 축 분 야	1. 건축법 중 다음의 권한	1.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사용승인	건축법 제14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읍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5조의2	읍
		3. 공작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읍
도 시 분 야	1. 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66조, 제68조	읍면
		3.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읍면
안 전 재 난 분 야	1. 소하천정비법 중 다음의 권한	1.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22조	읍면
하수도 분 야	1.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지도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읍면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읍면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 용어 등을 정비하고, 의회사무과 및 읍면에 위임이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불필요한 위임업무 삭제(안 별표)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2022.1.13.)
→ 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2023.12.28.)
→ 새마을소득사업 용자대상자 조사, 추천 등 권한
※ 용자금 회수 및 독촉 권한 위임은 존치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만료(2022.2.3.)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른 보증인 위·해촉 등 권한

○ 용어 정비(안 별표)

- 재무분야 :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 공사집행 →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 공사
집행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32호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콜다공증”을 “콜밀도검사”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제2항 중 “(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을 “(영상의학 및 진단검사의학) 등을 추가할”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진료비 및 기타 수가(제3조 및 제7조 관련)

항 목		단 위	수 가
치면세마(스케일링)		1회	10,000원
골밀도검사	65세 미만	1회/년	10,000원
	65세 이상	1회/년	5,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회	3,000원

【별표 2】

제증명발급수수료(수가기준)(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일반진단서	1통	500원	
2. 특별진단서	"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	5,000원	
4. 근로자 건강진단서	"	500원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	2,000원	
7. 사망진단서	"	500원	
8. 수질검사시험성적진단서	"	500원	
9. 발급증명서 재발급	"	300원	
10. 각종증명서 1통 초과발급	"	100원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2023. 11. 22 공포, 2024. 11.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현 행	개 정(24.11.23. 시행)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u>수수료 3천 원</u> 을 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u>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u> 를 내야 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름 → 1회 3,000원